

경상북도 고시 제2014-125호

김천시 부상월명 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인가 고시

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14년 4월 7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사업목적

인근 공장설립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면서, 투자유치 기업의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하류지역에 미치는 환경오염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함

2. 변경인가 내용

가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사업시행자 : LIG NEX1(주)

- 주 소 :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 207번지

나. 변경 인가내역

시 설 명	위 치	부지면적 (㎡)	처리공법	시설용량(㎥/일)		처리구역 면적(㎢)
				당 초	변 경	
부상·월명 공공 하수처리시설	김천시 남면 부상리 202-5번지	1,483	KSMBR	130	180	0.62

다. 사업시행기간 : 2014

라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: 기존 하수처리시설 부지내

마. 기타 관계서류는 김천시 상하수도과(054-420-6792)에 비치하고 있으니, 이
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